

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77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장,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급 상향 조정

- 1) 행정복지국장, 경제산업국장 : 4~5급 → 4급
- 2) 거창읍장 : 5급 → 4~5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·제14조·별표 3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5. 7.~5. 27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27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
					소계	농업 기술센터	보건소			
총 계		702	322	14	134	67	67	41	40	151
정무직		1	1							
일반직	소계	670	318	14	107	40	67	40	40	151
	4급	3 ±	3 ±							
	4~5 급	2 3	0 2		1		1		1 0	
	5급	37 38	15	3	5	4	1	3	0 ±	11
	6급 이하	628	300	11	101	36	65	37	39	140
별정직 (6급 상당 이하)		1	1							
연구직 (연구사)		5	2		2	2		1		
지도직 (지도사)		25			25	25				